

일본의 관세제도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무역은 대내외 무역여건의 변화에 맞춰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다.

앞으로 우리의 무역여건은 계속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21세기는 정보통신의 혁명으로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경제적·사회적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무역환경도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국제무역 환경에서 커다란 걸림돌 중의 하나는 우리 수출업체들이 교역 상대국의 통관 법규에 대하여 잘 숙지하지 못하여 외국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거나 지연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무역여건의 변화에 우리 수출업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교역상대국의 통관제도』를 발간하였으며 이번 호에서는 일본의 관세제도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1. 관세율의 형태

1) 기본적인 관세

○ 從價稅

일본에서 가장 일반적인 관세율의 형태는 종가세이다. 종가세의 경우는 과세 표준이 되는 수입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일이 중요하고 「關稅評價協定」에 기초한 과세가격 결정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종가세는 수입품의 가격에 비례하여 관세가 부담되므로 수입품의 價格變動에 따라 관세액도 변화되어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수입품의 적정한 가격의 파악이 곤란하고 또한 수입품의 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관세액도 낮아지게 되어 國內産業保護 기능이 저하되는 등의 결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從價稅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는 품질격차가 큰 물품, 단기적

인 가격변동이 그다지 없는 물품 등이다. 일본의 실행세율표(무세품을 제외)의 약 88%는 종가세율이고 종가세율은 현행 관세체제로 된 1961년(소화 36년) 당시에는 5%로 세분되어 있었지만, 케네디라운드, 동경라운드 등 각종 관세교섭과 관세개정을 거쳐 오늘날은 많은 품목이 0.1%로 세분되어 있다.

○ 從量稅

종량세란 수입품의 갯수, 용적, 중량 등의 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수입품가격의 고저는 관세액에 영향이 없다.

종량세의 장점은 종가세와는 반대로 세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고 동종·동질 물품에는 동액의 관세가 부과되어 종가세와 비교하여 국내산업보호의 기능이 강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는 수입품의 종류, 품질, 가

공도에 따라 세액을 세분하여 정하여야 하고 물가변동시 課稅負擔의 不均衡을 발생시키는 등의 결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종량세를 적용하기가 적당한 경우는 품질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물품, 가격과 약이 곤란한 물품 등이다.

○ 混合稅

지금까지 설명해 온 증가세와 종량세를 합친 것을 혼합세라고 한다. 이들에겐 증가·종량선택세(選擇稅)와 증가·종량병용세(複合稅)가 있다.

- 선택세란 동일 물품에 대하여 증가세와 종량세 모두를 정하여 그 중에서 높은 세액(일부품목은 낮은 세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과세가격이 높은 경우는 증가세가, 낮은 경우는 종량세가 적용되게 되어 관세의 국내산업 보호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 複合稅란 증가세와 종량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로 종량세는 수입품의 가격이 높아지면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에 일정 증가세를 Plus하여 국내산업을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2) 特殊形態의 관세

○ 差額關稅

차액관세는 수입품의 가격과 일정액(기준가격)과의 차액을 세액으로 하는 관세로, 국산품의 보호와 價格安定과의 조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수입품의 가격이 일정수준을 하회하여도 그 수준이하로 국내시장에 출회하는 것을 막고 역으로 높이 등기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관세부담이 경감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주: 종래 돼지고기 등에 대하여 차액관세가 적용되고 있었지만, 우루과이라운드 妥結로 차액관세 부분을 종량세화하여 관세화 한 경우로 이 範圍內에서 종래 차액관세제도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 SLIDE 관세

현재 양과, 銅의 피, 鉛의 피 등 國際市況의 변동이 심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품

의 가격이 저하되면 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무세로 함으로써 국내생산자와 국내수요자의 이해조정을 도모하는 형태가 취해져 있다. 이 관세는 무세로 되는 부근에서 수입품의 가격이 높아지면 관세액이 감소하여가는 부분(SLIDE 부분)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SLIDE관세라 불리우고 있다.

○ 季節關稅

계절관세란 수입되는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른 관세이다. 계절관세의 목적은 국산품의 出荷期가 계절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경우에, 그 시기에 이것과 결합하는 수입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산품의 보호를 도모하고 기타의 계절에는 낮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의 요망에 부응하고 있다. 현재, 바나나, 오렌지, Grape Fruit(pomelo와 비슷한 북아메리카 남부의 특산 과일), 포도 등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 關稅割當制度

관세할당제도란 특정물품의 수입에 있어서 일정 수량까지는 낮은 세율(1차세율)을 적용하고 그것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높은 세율(2차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1차세율이 적용되는 수량(관세할당수량)은 원칙적으로 그 물품의 國內需要量에서 國內生産量을 공제한 수량(부족량= 필요수입량)이다.

이 제도는 국내의 동종 물품의 生産者를 保護함과 동시에 가능한 한 낮은 관세로 수입하고자 희망하는 實需要者의 期待에도 副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세할당수량의 할당방식은 先着順方式과 事前割當方式 등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사전할당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관세할당제도는 높은 관세를 지불하면 수입할당증서가 없어도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할당제도와 같이 직접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2차세율을 너무 높게한다던지, 할당수량을 필요 수입량에 비하여 작게하면 수입할당제도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서울형태별품목수(1997년도)

서울의 형태	품목수	%	유세품목중의 %
무 세	2,486	34.0	—
중 가 세	4,234	57.9	87.8
중 량 세	103	1.4	2.1
선 택 세	246	3.4	5.1
복 합 세	0	—	—
차 액 관 세	16	0.2	0.3
SLIDE 관 세	15	0.2	0.3
계 절 관 세	7	0.1	0.1
관 세 할 당 제 도	142	1.9	2.9
국 가 무 역 품 목	61	0.8	1.3
실 행 세 목 수	7,310	100	100

2. 관세의 감면, 면세, 여세 및 환부제도

1) 제도의 개요

- 일본은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정책상의 요청 및 국제조약의 이행, 國際慣行 또는 國際禮讓을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할 관세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 또는 관세를 납부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그 납부한 관세의 일부 혹은 전부를 되돌려 주거나 혹은 환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 관세정률법 및 관세잠정조치법에 규정한 개개의 관세감세, 면세, 여세, 환부제도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2) 관세의 감면세제도

- 관세의 감면세제도란 법령등에서 정한 일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 수입물품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할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의 一部免除를 減稅라고 부르며 관세의 전부면제를 免稅라고 부르고 있다.
- 관세의 감면세 목적은 국내산업의 육성, 보호, 무역 또는 학술의 진흥,

사회후생, 정책상의 요청, 국산품 또는 이미 關稅를 納付한 물품의 二重課稅 배제, 국제관행 또는 국제예양 등이 있지만, 기타 물가대책을 목적으로 한 면세 제도도 있다.

- 관세의 감면세 종류로는 감면세의 효과를 물품의 수입후의 사실에 관련시키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면 관련이 없는 無條件免稅와 관련이 있는 條件附減免稅로 구분된다. 조건부감면세에 대하여는 조건위반에 대한 벌칙의 유무에 의거 벌칙이 있는 경우를 制限的條件附減免稅, 벌칙이 없는 경우를 一般的條件附減免稅로 나눌 수 있다.
- 또한, 근거가 되는 법의 안정성에 의거 구분하면 恒久的減免稅와 暫定的減免稅로 구분할 수 있다. 항구적감면세는 관세정률법에 규정되어 있고, 잠정적 감면세는 관세잠정조치법에 규정되어져 있다.
- 관세의 감면세를 받기 위하여 수입자의 한정, 감면세를 받기 위한 절차, 수입후 特定用途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 제조공장의 승인, 기타 수입후의 사용에 대한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관세의 감면세규정의 적용을 받은 조건부물품에 대하여 조건이 준수되

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로부터 감면된 관세액을 追徵하는 이외에 罰則이 적용되어지는 경우가 있다. 1995년도 감면세액은 약 1,695억 엔이다.

3) 관세의 戻稅制度

- 관세의 戻稅란 법령이 정한 일정요건에 합치할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여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그 납부한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세를 납부한 者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 현행 戻稅制度로서는 수입물품이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의 여세, 수출물품의 製造用原材料에 대한 戻稅, 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수입원료품에 대한 戻稅, 수입시와 동일한 상태로 再輸出된 경우의 戻稅 및 위약품등의 再輸出戻稅가 있다. 1995년도 관세의 戻稅額은 약 12억엔이다.

4) 관세의 還付제도

- 관세의 還付란 납부한 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준다는 점에서는 戻稅제도와 유사하지만, 환부를 받을 자는 그 관세를 납부한 者로 한정되지 않고 법령상 특별히 定하여진 者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한다.
- 관세의 환부제도는 減免稅 및 戻稅를 적용할 수 없는 실태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취하여진 조치로 그 목적은 국내산업의 육성, 유통COST의 인하 등이다.
- 관세의 환부제도는 관세를 納付한 輸入原油등으로부터 일본에서 제조된 석유제품(휘발유등)을 특정제품(석유화학제품등, 중간留分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1995년도 관세의 환부액은 약 42억엔이다.

關稅의 減免稅 및 還付制度 一覽表(조약·협정에 의한 면세 제외)

(1997년 4월 1일 현재)

1. 관세정률법 체계

항구적감면세 및 여세(관세정률법)	무조건 감면세	10조	변질손상등의 경우 감면
		12조	생활관련물자의 감면세(탄력관세제도)
		14조1~8, 16~18	협정의 무조건면세
		11조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감세
		14조9~11, 13, 14	재수입면세
		14조의2	재수입감세
		14조의3	외국에서 채포된 수산물등의 감면세
		16조	외교관용품등의 면세 (자동차, 주류 및 담배 제외)
		19조의2	과세원료품등에 의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의 면세
	해체조건부감면세(일반적)	15조	특정용도 면세
		16조	외교관용품등의 면세 (자동차, 주류, 담배)
		17조	재수출면세
		18조	재수출감세
	해체조건부감면세(제한적)	13조	제조용원료품의 감면세
		19조	수출물품제조용 원료품의 감면세

	여 세	10조	변질손상등의 경우의 戻稅
		19조	수출물품제조용 원료품의 여세
		19조의2	과세원료품등에 의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의 戻稅
		19조의3	수입시와 동일한 상태로 재수출된 경우의 戻稅
		20조	위약품 등의 재수출 또는 폐기의 경우 戻稅

2. 관세잠정조치법관계

잠정적 감면세 및 환부 (관세잠정조치법)	무조건 감면세	8조	가공 또는 조립을 위하여 수출된 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품의 감세	
		해제 조건부 감면세(제한적)	4조	항공기 및 그 부분품 등의 면세
			5조	우주개발용품등의 면세
	7조의2		제조용원료품의 감면세	
	환 부	6조	석유화학제품제조용 휘발유등에 관한 환부	
		7조	석유아스팔트등에 관한 환부	

(주)이들 감면세제도 이외 「沖繩(오키나와) 반환에 따른 特別措置에 관한 법률」 및 조약·협정에 의한 減免稅制度가 있다

3. 특혜관세제도

1) 제도의 개요

특혜관세제도는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선진공업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最惠國稅率(MFN) 보다도 낮은 세율(特惠稅率)을 적용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 공업화의 촉진 도모, 그들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1년 8월부터 실시되어 그후 여러 가지의 개선조치가 강구되어지고 있다(적용기한 2001년 3월 31일).

○ 대상품목

- 농수산물(HS 1~24류)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특정물품을 선별하여 특혜관세의 대상이 되는 Positive List방식을 취하고 있고, 73품목(HS 4단 위 기준. 이하 같다)이 대상품목이 되고

있다.

- 광공업상품(HS 25~97류)

광공업상품에 대하여는 국내산업상의 배려 등에 기초하여 특혜관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27품목(예외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특혜관세의 대상이 되고 있다(Negative List 방식).

○ 특혜세율

- 농수산물

농수산물의 특혜세율은 개개 품목의 사정에 따라 정하여져 있고 이들의 특혜세율의 현행 실행세율에 대한 인하폭은 10%부터 100%로 되어 있다.

- 광공업상품

광공업상품의 특혜관세율은 원칙적으로 무세이지만, 국내산업의 사정 때문에 특혜관세를 무세로 함이 곤란한 66개품목(SP (Selected products) 품목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특혜관세율의 인하폭을 실행세율의 50%까지로 하고 있다.

○ 공여방식

- 개요

· 농수산품의 특혜관세 대상품목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에 대하여는 농수산품의 수입이 특혜관세의 적용에 의거 증가, 국내산업에 損害가 발생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政令에 의거 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가 있다(停止措置가 취하여 지지 않는 한 특혜관세가 적용된다)고 하는 Escape Clause방식에 의거 공여되고 있다.

· 광공업산품의 특혜관세대상품목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에 대하여도 원칙은 Escape Clause방식이지만, 국내산업상 민감한 품목(특정특혜광공업산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25품목 구분마다 특혜관세적용 공여한도(Ceiling한도)가 설정되어 있고 특혜적용수입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적용이 정지되는 Ceiling한도 방식에 의거 공여되고 있다. 이 경우 특혜관세의 이익을 보다 많은 국가에 균점시켜 受益國間의 이익의 公平分配 측면에서 특혜수입국으로부터의 품목구분의 특혜적용 수입이 Ceiling한도의 1/4(1983년도 Ceiling한도의 1/2 또는 1986년도 Ceiling한도의 1/3중 많은 편을 하회하는 때에는 많은 편)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해 수입국으로부터의 당해품목구분에 대하여 특혜적용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다(1/4 限界에 다다른 조치). 다만, 후기 4)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品目區分은 除外한다.

- 특정특혜광공업산품등에 있어서의 Ceiling한도 산정방식
Ceiling한도 算定方式은 다음중 하나의 방식에 의하고 있다.

· 1989년기준방식(29품목구분)
1989년 특혜수입국으로부터의 수입액등(기준액등)+적용년도의 전전년도 특혜수입국 이외의 국가로부터의 수입액등의 10%(포착액등) = Ceiling한도
(注)포착액등은 1997년도를 예로

들면 1995년 수입실적을 기초로 하여 계산되도록 되어 있다.

- 일정률방식(96품목구분)…전년도의 Ceiling한도에 일정률(6%이하로 정령에서 정하는 비율)이하의 신장률을 곱하는등의 방식
 - i 전년도 Ceiling한도의 6%중(19품목구분)
 - ii 전년도 Ceiling한도의 3%중(25품목구분)
 - iii 전년도 Ceiling한도 거치(52품목구분)

상기의 방식에 있어서 적용년도의 계산된 Ceiling한도가 전년도의 Ceiling한도를 하회하는 때는 전년도의 Ceiling한도를 그대로 당해연도의 Ceiling한도로 하도록 되어 있다.

- 특정특혜광공업산품등에 있어서의 Ceiling한도 관리방식

특혜관세의 적용방법은 수입절차의 先着順에 의한 방법과 割當에 의한 방법이 있고 이 관리방식에는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있다.

· 日別管理品目

38품목구분에 대하여는 특혜관세적용 실적이 Ceiling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의 다음 다음날로부터 특혜관세의 적용이 정지된다.

· 月別管理品目

64품목구분에 대하여는 月단위로 특혜관세적용실적이 집계되고 집계액이 Ceiling한도를 초과하게 된 달의 다음 다음달 初日부터 적용이 정지된다.

· 事前該當品目

23품목구분(구연산, 피혁관련 4개품목구분, 모피제품, 革靴, 섬유관련 11품목구분, 우산 및 그 부분품 등)에 대하여는 Ceiling의 한도내에서 사전에 수입자에 대하여 할당된 액의 한도내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할하여 특혜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Ceiling한도의 全體彈力化 措置 및 1/4의 탄력화 조치

국내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고 동시에 수입촉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특정특혜관세 광공업산품에 대하여는 특혜적용 수입이 Ceiling한도를 초과하여도 별도 정지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계속하여 특

해관세의 적용을 계속할 수가 있다(Ceiling 한도의 전체타력화 조치). 또, 어느 특혜수익국가로 부터의 수입이 Ceiling한도의 1/4을 초과하여도 특혜관세의 적용이 계속되어진다(1/4 타력화 조치). 현재 125품목구분중 35품목구분이 Ceiling한도의 전체타력화 품목에, 65품목구분이 1/4의 타력화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 특혜수익국

특혜수익국으로서는 현재 155국가 및 25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 後發開發途上國 特惠特別措置

후발개발도상국(LLDC 42개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모든 특혜공여 품목에 대하여 농수산물, 광공업품도 특혜세율을 無稅로 함과 함께 특정특혜광공업산품등에 대하여도 Ceiling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Escape Clause방식에 의거 관리하는 특별조치가 1980년도부터 도입되어 있다.

○ 특혜수입실적의 公布

특혜적용수입액 또는 수량은 매월 官報에 공표되도록 되어 있다.

2) 原產地規則

○ 총론

特惠關稅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물품은

- 특혜수익국으로부터 일본으로 直接輸送되어야 한다. 다만, 환적등 運送上의 理由 또는 博覽會등에의 出品 理由로 非原產地國家를 經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일본이 정하고 있는 原產地 認定基準을 充足하여야 한다.

○ 直接輸送

특혜수익국 원산품이 일본으로 수송되는 경우, 당해 특혜수익국 이외의 국가(이하 「第 3國」이라 한다)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일본으로 향하여 직접 輸送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受益國으로부터 일본으로 直接運送된 物品으로 간주된다.

- 운송상의 이유에 의거 제 3국의 領域에서 환적 또는 일시 藏置만이 이루어진 물품
- 博覽會, 展示會 기타 이와 類似한 場所에 出品을 위하여 수출된 물품으로 그 수출자에 의거 出品後에

일본으로 수송되는 물품

환적, 일시장치 또는 박람회등의 출품은, 이들이 개최되는 제 3국의 보세지역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당해 제 3국의 稅關監督下에 實施되지 아니하면 안된다.

○ 原產地 認定基準

한 나라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품(完全生産品)은 그 國家의 原產品으로 인정되어진다. 원산품 이외의 물품을 원재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써 加工·製造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변경을 수반하는 가공 또는 제조에 의거 생산된 물품(實質加工品)이 아니면 원산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질적 변경을 수반하는 加工·製造란 원칙적으로 사용 원재료의 관세율표(HS4단위)의 稅番이 變更되지 않는 가공·제조를 말한다.

예를 들면

- 특정물품에 대하여는 가령 관세율표의 稅番(4단위) 변경이 있어도 일정조건에 합치하는 가공이 필요할 것
- 기타 특정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율표의 稅番(4단위) 변경이 없어도 일정조건에 합치하는 가공·제조에 한정된 물품으로 實質的變更을 초래하는 경우로 한다. 前者에 대하여 특정의 가공·제조 방법은 예를 들면 수익국에 수입되는 원재료의 가격이 수출되는 제품가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 수입되는 原材料의 가격이란 특혜수익국으로 수입되는 시점의 세관에서 課稅價格이고 수출되는 물품의 가격이란 수출시의 F.O.B가격을 말한다.

○ 自國關與分の 특례기준

일본으로부터 특혜수익국으로 수출된 원재료가 당해수익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되어지는 경우, 이들 原材料는 당해 특혜수익국의 원산품으로 간주된다(自國關與라 한다). 다만, 국내 산업에 특히 영향을 미치는 特定產品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취급의 적용을 받는 경우의 절차로서는 양식A의 기타, 수출국의 발급기관이 증명하는 자국관여분의 添附證明書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累積原產地制度

東南亞國家聯合(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및 베트남의 7개국에서 조직한 地域協力機構, 이하 『아세안』이라 한다)의 지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는 累積原產地制度가 적용된다.

이 제도하에서는 아세안의 2개국 이상의 국가를 통하여 생산이 되어 일본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아세안국가 전체를 하나의 국가로 간주하여 상기 '원산지 인정기준' 및 '자국관여분의 특례기준'의 원산지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의 아세안 국가의 완전생산품 및 일본으로부터의 자국 관련 물품은 다른 아세안국가의 완전생산품으로 간주됨과 동시에 하나의 아세안 국가에서 이루어진 가공·제조는 다른 아세안 국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도록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實質加工基準의 적용상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되게 된다.

- 非原產品比率의 산정에 대하여는 다음에 계기된 물품이 아세안의 산품으로 취급된다.

- ① 아세안산품만으로 구성된 원재료의 전부
- ② 일본에서 아세안 域內로 수출된 물품만으로 구성된 원재료의 전부
- ③ 전기 ① 및 ②에 계기된 물품만으로 구성된 원재료의 전부
- ④ 전기 ① ~ ③과 아세안의 域外(일본은 제외)산품으로 구성된 원재료중 전기 ①~③에 계기된 것

- 가공·제조공정에 대하여는 생산에 관련된 아세안국가 전체가 일정한 加工·製造의 요건을 충족하면 原產品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된다. 이 누적원산지 기준에 의거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물품을 生産하여 동시에 이것을 일본으로 수출하는 국가로 한다. 아세안산품에 대하여 累積原產地制度의 적용을 받고자하는 경우는 양식A의 기타, 수출국 발급기관이 증명하는 『累積加工·製造證明書』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증명서류

특혜세율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다만,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 또는 형상에 의거 그 원산지가 명백하다고 인정한 물품 또는 과세가격의 총액이 20만엔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1), 2) 모두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일반특혜원산지증명서(양식A)
- 제 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을 증명하는 원산지로부터 일본까지의 通過船荷證券의 사본, 환적등 또는 박람회등에 출품된 비원산국의 세관 기타 관공서가 발급한 증명서 또는 이들 서류 이외의 서류로 세관장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환적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특수관세제도

○ 특수관세제도의 개요

일본의 특수관세제도로서는 相計關稅, 不當廉賣關稅, 緊急關稅, 報復關稅 등이 있다. 상계관세, 부당염매관세란 수출국등에 의거 補助金の 교부 혹은 수출자등에 의한 부당염매(덤핑)라고 하는 貿易秩序를 교란하는 행위에 의거, 일본의 산업이 損害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割増關稅이다. 긴급관세란 외국에서 가격의 하락등에 의한 수입증가 사태 때문에 국내산업을 긴급히 보호하기 위한 할증관세이다. 보복관세등이란 WTO협정상의 이익을 지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어느 국가가 일본의 船舶, 航空機, 輸物品 또는 通過物品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할증관세이다.

상계관세, 부당염매관세제도는 동경라운드교섭에서 『補助金·相計措置협정』, 『덤핑방지협정』이 制定되어 1980년 4월에 법률 개정, 5월에 定率 개정이 되어 발동요건, 調査開始로부터 課稅決定에 이르기까지의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더우기 우루과이라운드 교섭결과, 무역 Rule의 공정한 운용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협정이 정비되었다는 점을 인식, 1994년 6월 12일에 법률, 定率이 개정되고 상계관세, 부당염매관세 및 긴급관세의 각제도에 대하여 과세기간의 상한 설정, 절차의 명

확화 등이 정비될과 동시에 보복관세에 대하여도 절차가 명확화 되었다.

○ 특수관세의 신청·조사·발동에 대하여는 종래부터 미국·EU 여러나라에서는 다수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일본에서는 1975년대 중반까지 전혀 없었다. 그러나 1982년 이후 일본에서도 상계관세 및 부당염매관세의 과세신청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 왔다. 1982년 12월에 일본 방적협회가 파키스탄산 면사에 대하여 상계관세, 한국산 면사에 대하여 부당염매관세의 과세신청을 하였다. 이것이 일본에서 최초의 특수관세 부과신청이다. 계속하여 1984년 3월, 일본 Ferro alloy협회가 노르웨이, 프랑스산 Ferro Silicon(製鋼工程에 있어서 脫酸劑로써 이용되어지는 合金鐵의 일종)에 대한 상계관세의 과세신청을 하였다. 게다가 1988년 10월에 일본 Knit공

업조합연합회가 한국산 knit제 sweater류에 대한 부당염매관세의 과세신청을 하였다. 최근에는 1991년 10월에 일본 Ferro alloy협회가 중국, 노르웨이 및 남아프리카산 Ferro silico 망간에 대하여 또, 1993년 12월에는 일본방적협회가 파키스탄산 면사에 대하여 부당염매관세의 부과신청을 하였다. 이상의 7건중 1982년에 신청되었던 파키스탄산 면사에 대하여는 국내법령 및 GATT협정에 의거 일본에서 최초로 조사도 실시되어 그 결과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는 최종결정에 이르렀다. 또, 1991년에 신청이 이루어졌던 중국산 등의 Ferro, Silico 망간에 대하여는 1993년 2월부터, 1993년 12월에 신청이 이루어졌던 파키스탄산 면사에 대하여는 1995년 8월부터 부당염매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일본의 특수관세제도의 개요

구 분	부당염매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보복관세등
국내법상 근거규정	·정률법제8조 (1920년 7월제정) ·부당염매관세에 관한 정령	·정률법제7조 (1906년 3월제정) ·상계관세에 관한 정령	·정률법제9조 (1961년 3월제정) ·긴급관세등에 관한 정령	·정율법제6조 (1906년 3월제정) ·보복관세등에 관한 정령
GATT상 근거규정	·일반협정제6조 ·반덤핑협정	·일반협정제6조 ·보조금·상계 조치 협정	·일반협정제19조 (Safe-guard조치) ·Safe-guard협정	·일반협정제23조 (분쟁해결절차) ·분쟁해결에 관한 규제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도개요	부당염매된 수입물품에 대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물품에 대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할증관세	수입이 급증된 특정 물품에 대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할증관세	○WTO 협정상상의 이익을 준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할증관세 ○어느나라가 일본의 선박, 항공기, 수출 물품 또는 통과물품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불리한 취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할증관세

구 분	부당염매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보복관세등
적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에 부당염매의 사실이 있을 것 ○ 당해물품의 수입이 일본의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혹은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국내 산업을 방해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어질 것 ○ 일본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질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물품이 외국에서 생산 또는 수출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고 있을 것 ○ 좌 동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되지 않았던 사정의 변화에 의거 당해물품의 수입증가가 있을 것 ○ 당해수입이 일본의 경쟁산업에 중대한 손해를 주거나 또는 줄 우려가 있을 것 ○ 국민경제상 긴급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질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분쟁 해결기구등의 승인을 받을 것 ○ 어느 국가가 일본의 선박, 항공기, 수출물품에 대하여 차별적인 불이익한 취급을 하고 있을 것
관세조치	(정상가격-부당염매가격)과 동액 이하의 할증관세	보조금과 동액이하의 할증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유사물품의 국내적정도매가격-(수입물품의 과세가격)-(통상의 관세율에 의한 관세)]와 동액이하의 할증관세 ○ 양허세율의 철회 또는 수정 	증가 100%범위내에서의 할증관세
정령에서 정한 발동 지정 사항	물품의 품명, 공급자 또는 공급국, 기간, 할증관세의 액	좌 동	물품의 품명, 기간, 할증관세의 액	좌 동
사후조치	규정 無	좌 동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	규정 無